

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 련 418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19년 3월 8일

제 안 자 : 행정자치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위원회 위원 임기의 합리적 조정을 위하여 위원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수정 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위원회 위원 임기를 2년으로 조정(안 제7조 제4항).

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7조제4항 중 “3년”을 “2년”으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개 정 안	수 정 안
제7조(위원회 설치 등) ④ 위원의 임기는 <u>3년</u> 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.	제7조(위원회 설치 등) ④ 위원의 임기는 <u>2년</u> 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.

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를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, 도시행정 전반에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「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스마트도시법”이라 한다), 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 등 그 밖에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관련 법령에 따른다.

제3조(기본원칙)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정책(이하 “정책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.

1. 시민의 수요를 반영하여 정책을 입안하고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.

2. 최신 기술의 도입과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학계, 기업 등 관련 민간부문과 협력하여야 한다.
3. 교통, 안전, 환경 등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첨단기술을 선제적으로 적용하고 그 성과를 확산하여야 한다.
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2장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

제5조(기본계획 수립) ① 시장은 정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

1. 정책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
2. 정책의 목표와 전략 및 추진체계
3. 각 분야별 정책
4. 시민, 단체, 기업, 공공기관 등과의 협력
5. 정보보안, 이용자 권익 보호
6. 정보문화 창달, 정보격차 해소 등 역기능 방지
7. 정책 추진을 위한 자원조달 계획
8. 그 밖에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

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스마트도시법 제4조에 따른 스마트도시종합계획, 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 제6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과 「전자정부법」 제5조에 따른 전자정부 기본계획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

제6조(시행계획 수립·시행)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.

제7조(위원회 설치 등) 시장은 정책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기본계획의 수립
2. 기본계획의 중요사항 변경
3. 주요 정책의 추진성과 평가
4.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또는 위촉하고,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은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당연직 부위원장 1명은 스마트도시정책관으로 한다.

1. 위촉직 위원 : 학계, 기업, 민간단체,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중에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관련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

2. 당연직 위원 : 스마트도시정책관,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

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.

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사무관이 된다.

⑥ 시장은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.

제8조(위원회 운영) 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촉직 부위원장, 당연직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② 회의는 위원장의 소집이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한다.

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위원회는 심의 안전과 관련된 공무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⑤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과 전문가에게 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

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9조(분과위원회) 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.

③ 분과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.

④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제8조를 준용한다.

제10조(시민참여와 민관협력) ① 시장은 정책 추진의 과정을 시민과 공유하고 시민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거나 관련 기업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③ 시장이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④ 시장은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개인, 기업, 단체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결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·제공할 수 있다.

제11조(스마트도시책임관) ① 시장은 정책의 수립 및 시행, 사업의 조정, 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 제11조제2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책임관(이하 “책임관”이라 한다)을 둔다.

② 책임관은 스마트도시정책관이 된다.

제3장 정책의 추진

제12조(부문별 정책의 추진) ① 시장은 교통, 안전, 환경 등 부문별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빅데이터, 사물인터넷, 인공지능, 블록체인, 클라우드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 관련 정책을 추진하려는 부서의 장은 스마트도시정책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.

제13조(스마트도시기반시설 관리·운영) ① 시장은 정보자원, 정보통신 등에 대한 공동 이용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스마트도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·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14조(정보시스템의 연계·통합)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집된 정보가 스마트도시기반시설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통합적·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내 정보시스템이 연계·통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.

제15조(정보통신망의 상호연동 등) ① 시장은 정보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영과 정보의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간 상호연동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·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정보통신망을 공동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16조(스마트도시 전시관 운영) ① 시장은 정책 추진의 계획·과정·성과를 시민과 공유하고, 기업의 혁신적인 기술·제품·서비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도시 전시관(이하 “전시관”이라 한다)을 운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전시관의 원활한 운영·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17조(세계스마트시티기구 지원) ① 시장은 세계스마트시티기구 [(WeGO), 이하 “기구”라 한다]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기구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

2.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의 기구 사무국 파견

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 경비 등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구 사무국의 사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거나 기구 사무총장(이하 “사무총장”이라 한다)에게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

수 있으며, 사업이 국제협력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.

③ 사무총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 연도 개시 5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시장이 지원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연도 사업 정산서를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사무총장으로부터 사업 계획서 및 사업 정산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8조(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설치·운영)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의 추진을 위하여 같은 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 다만, 협의회 회의는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·운영하고,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된다.

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협의회 위원장은 스마트도시법 제2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④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 따른 협의회 구성·운영 기간으로 하며,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19조(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) ①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·고령자 등이 쉽게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.

②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.

제20조(정보격차 해소) ① 시장은 모든 시민이 정보통신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정보취약계층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유상 또는 무상 지원
2. 제1호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
3.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시행
4. 그 밖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21조(정보보호) ① 시장은 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과정에서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하여 정보보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정보보안 수준향상을 위해 보안컨설팅, 교육, 정보보안

진단 및 관리실태 점검을 해야하며, 정보보안 감사 및 조사 등을 시행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정보화사업 계획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정보보안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, 보안성 검토를 이행해야 한다.

④ 시장은 해킹 등 각종 사이버 공격에 상시 대응체계를 운영하여야 하며, 이를 위한 통합관제운영센터를 설립 및 운영해야 한다.

⑤ 그 밖의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제22조(개인정보 보호) ① 시장은 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계획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웹사이트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 권리 보장에 관한 세부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」와 「서울특별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제4장 보칙

제23조(저작권 등록) 시장은 저작권으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프로그램 및 콘텐츠 등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등록하고 보호 조치하여야 한다.

제24조(수탁업무 처리) ① 시장은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정보시스템 관리, 데이터 처리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업무를 수탁받아 처리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수탁업무 처리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에 따른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「서울특별시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조례」는 폐지한다.

제3조(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「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」 제7조에 따라 구성된 서울특별시정보화전략위원회와 그 위원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위원회와 그 위원으로 본다.

제4조(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)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서울특별시정보화전략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임명 또는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[별표]

정보시스템 등의 수탁수수료 징수기준(제24조제2항 관련)

관리 유형	부과 대상	소요경비 산출 방법	기 준
장소 임대	장소 임대료	○ 시스템실 임대료 ·건물대부료산출기준액 × (전용면적/시스템실면적) × 대부요율	○ 서울특별시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 적용 ·대부요율 (제26조) ·건물대부료산출기준액(제29조) ○ 전용면적 : 2.88㎡ (19" 랙기준)
	전기 사용료	○ 서버 전기 사용료 (월) ·(사용량 × 사용시간 × 단가) + 기본요금 ○ 항온항습기 전기사용료(월) ·사용량 × 사용시간 × 단가	○ 사용량 : 계측값 ○ 단가 : 한국전력 전기요금표 적용(일반용 전력(을) 고압A 선택Ⅱ 요금제 적용) ○ 사용량 : (해당서버사용량/전체서버사용량) × 시스템실 항온항습기 전체사용량 ○ 단가 : 한국전력 전기요금표 적용(일반용 전력(을) 고압A 선택Ⅱ 요금제 적용)
자원임대		○ 도입금액 × 효율 × 1.1 × 자원 사용율	○ 효율 : 해당연도 예산편성 H/W, S/W 유지보수 효율 적용 ○ 1.1 : 부가가치세 ○ 자원사용율 : 해당 자원 사용량/전체 자원사용량
네트워크 사용료	회선 사용료	○ 인터넷 회선 ·인터넷사용료 총금액 × (사용대역폭/총대역폭)	※ 별도 전용회선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은 위탁기관 부담
	통신장비 사용료	○ 통신장비 ·도입금액 × 효율 × 1.1 × (사용 port 수 / 전체 port 수)	○ 효율 : 해당연도 예산편성 H/W, S/W 유지보수 효율 적용